

추가약정서(판매기업용)(e-안심팩토링대출용)

현 행	개 정	비 고
<p>제1조 ~ 제7조 <기재 생략></p> <p>제8조 (면 책)</p> <p>① 제출서류의 허위, 위·변조,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본인의 부담으로 하며, 은행에 대하여 <u>아무런 청구도 하지 아니 하기로 합니다. <신설></u></p> <p>② <기재 생략></p> <p>제9조 ~ 제11조 <기재 생략>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1조 ~ 제7조 <현행과 동일></p> <p>제8조 (면 책)</p> <p>① 제출서류의 허위, 위·변조, 작성오류 등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는 본인의 부담으로 하며, 은행에 대하여 <u><삭제>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합니다. 다만,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을 경우 은행은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기로 합니다.</u></p> <p>② <현행과 동일></p> <p>제9조 ~ 제11조 <현행과 동일></p> <p>※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.</p>	<p>- 약관변경 권고 반영</p>